

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■ 제안이유

- '99. 4. 30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 권고안을 근간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행정간소화와 규제 개혁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가)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근거 규정 마련 (안 제5조)
 - 현재는 개별조례에서 위탁근거를 두어 위탁하고있으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위탁관리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
- 나)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 지급 구비서류 감축 (안 제6조 제3항)
 - 인감증명서, 각서 징구 규정 삭제로 민원인 편의 도모
- 다)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간소화 (안 제14조)
 - 손해보험증서 제출 및 사용허가표지 부착 규정 삭제
- 라) 생활보호대상자 관련
 -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부담을 완화 (안 제22조제1항제5호)
 -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영세 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㎡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자부담률을 현재 10년 이내 연 8%에서, 10년 이내 연5%로 완화
 -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대부시 대부료율 (안 제23조제6항).
 -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대부시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을 적용
- 마)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시 대부료율 (안 제23조제2항)
 -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,000분의 50 또는 토지 시가표준액의 1,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,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으로 단일화
- 바)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범위 확대 (안 제23조제9항)
 -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, 단체, 법인, 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시 대부료율은 1,000분의 10을 적용
- 사) 대부료, 사용료의 가감 적용 특례 규정 신설 (안 제23조의2제2항)
 -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 시 산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%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조정 가능

아) 외국인 투자유치관련

-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(안 제23조의3)
 - 제23조의3 제1호 나목·다목, 제2호 가목·나목, 제3호 가목·나목의 외국인 “투자 제조업”을 외국인 “투자사업”으로 확대
-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확대(안 제39조의4).
 - 제39조의 4 제3항 제2호 “공장건설사업”을 “사업”으로,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의 “공장용지내의 재산”을 “사업장 내의 재산”으로
- 외국인에게 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 특약등기 (안 제39조의4제6항)
 -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 매각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,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·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등기 규정을 신설

자)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세분화(안 제25조제5호, 제6호)

- 지하 단독건물 부지평가기준과 특수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

차) 잡종재산의 신탁 근거 신설 (안 제31조의2).

-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, 처분신탁토지신탁 (임대, 분양)으로 구분

카) 청사정비 관련

- 청사 설계의 기준 및 규모 현실화 (안 제46조)
 - 건축의 다양성과 현실성에 맞게 철근 콘크리트 및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규정의 삭제
- 종합청사 신축시 주체별 신축 도모 (안 제48조제1항)
 - 지금까지는 청사신축시 경찰관서,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포함하여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였으나, 앞으로는 청사 정비 주체에 따라 산하기관만 적용

타) 관사 관련

-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(안 제59조의2)

파) 공유재산업무의 국유재산 준용범위 명시(안 제61조)

-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준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준용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질의 회신, 지침, 편람, 예규 등만 준용토록 명시

■ 검토보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('99. 4. 30)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행정간소화와 실효성 없는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및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
- 조례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을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하였으며
-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조례안 제23조 제6항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 재산매각 대금 분할납부시 이자부담율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대부시 대부료를 개정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정이고
- 또, 외국인에 대한 투자기업 범위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범위 확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 생각됩니다.
-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하고, 주민과 기업의 편의,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.